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행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당의 대표자,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, 공직선거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, 그 지급기간을 명시함(안 제34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「공직선거법」 제135조와의 정합성 및 국회의원 보좌관·선임비서관 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보수 지급 가능 여부의 불명확성에 대한 검토 필요
- 정당의 대표자,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, 공직선거후보자 등(이하 “선임권자”)은 현행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.
 - 개정안은 선임권자가 이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

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, 국회의원의 보좌관·선임비서관 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정치자금법

제34조(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)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선임권자”라 한다)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정당(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,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대표 자
2. 후원회의 대표자
3.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
4.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, 당대표경선후보자등
5. 공직선거의 후보자·예비후보자(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).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,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.
6. 선거연락소장(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)

②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. 다만,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·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두거나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·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지방의회의원, 공직선거의 후보자·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
2.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·날인한 약정서(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)

⑤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및 예금계좌의 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- 그런데 현행 「공직선거법」 제135조제1항은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(이하 “선거사무장등”)

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,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을 명시하고 있고,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·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·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,

안 제34조의2제1항 본문과 같이 이 법 및 ‘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사무’에 대하여 ‘정당한 보수’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기간 동안 「공직선거법」 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의 금액 등을 넘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,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.

공직선거법

제135조(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) ①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·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(이하 이 조에서 "선거사무장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의 유급사무직원,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·선임비서관·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,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·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·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.

1.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: 14만원 이내
2.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와 시·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, 대통령선거의 시·도선거연락소장: 14만원 이내
3.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, 대통령선거 및 시·도지사선거의 구·시·군선거연락소장: 10만원 이내
4.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,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: 10만원 이내
5. 선거사무원·활동보조인: 6만원 이내

6. 회계책임자: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

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·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·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·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.

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둘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(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금액은 해당 후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- 또한, 안 제34조의2제1항 본문은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항 단서는 국회의원의 보좌관, 선임비서관 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당초 개정안 원안은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‘지급하여야 한다’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,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‘지급할 수 있다’는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었는데, 이 과정에서 단서 규정의 의미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음.

즉, 개정안의 취지가 국회의원의 보좌관, 선임비서관 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때에는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취지인지 아니면 재량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,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.

- 참고로,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(정확히는 국회사무처)로부터 급여를 받는 보좌관, 비서관 등에게 정치자금에서 정기·부정기적으로 임금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¹⁾하나,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실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매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정기 급여 외에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의 등 추가업무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별도로 **격려금**을 정치자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그 보좌관, 비서관, 비서에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통상의 격려금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²⁾,

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회계책임자의 사무와 관련하여 격려금을 정치자금에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임³⁾.

(전문위원 김 성 완)

1)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「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」, 2024. 6., 56p.
2)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, 「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보좌관 등의 격려금 지급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답」, 답변일 2005. 3. 24.
3)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(2025. 2. 20.)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답변 등 참조